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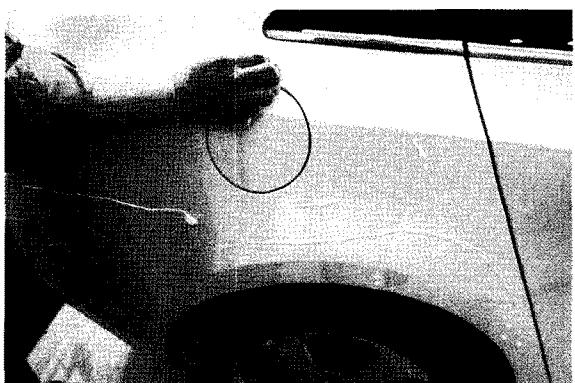


“ 차량용 광택제를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차량용 광택제가 꾸준히 유통되고 있다. ”

* 불법 차량용 광택제 현장조사 실시

‘차량용 광택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관리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이다.

광택제 제품은 차량에 광택을 낼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로써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미국
산 M社 제품이다. 이 제품은 대부분 M社의 국내 지사



▲ 차량용 광택제는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해당업체의 매장에서는 다양한 차량용 제품들 판매하고 있었다.

를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그 종류가 다양하여 무분별하게 국내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상황이 파악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조사 지역은 부산으로 국내 차량용 제품을 다양으로 판매하고 있는 B온라인 쇼핑몰의 본사를 방문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조사원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많은 차량용 제품들 속에서 '광택제' 제품을 선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 업체 관리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은 미국산 M社의 제품으로 10여종의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차량용 광택제'의 경우 자율 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확인 후 인증마크(KC 또는 KPS)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나, 매장에 진열된 제품의 대부분에서 이러한 인증마크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업체 관리자는 "환경부에서 매년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런 절차만 통과하면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사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대상품목의 경우 우선적으로 안전성을 검증받고 유통 및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준비해간 제품안전 홍보물을 관리자에게 보여주며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차량용 광택제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해당 품목의 경우 국가에서 공인한 인증기관에 판매 및 수입 전 시험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안정성을 검증받은 제품만을 판매해야...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이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판매중인 1,000여종의 제품들의 인증품목 대상 여부를 100%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인증대상품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필요가 아닌 필

수 요소”라고 조사자가 설명하자 관계자도 이에 대해 수긍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경쟁사보다 싸게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구조 때문에 저가의 불법제품들의 수입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한결 같은 설명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유무를 소비자가 파악하기 쉽지 않아 불법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으로 파악했다. “소비자의 경우도 무조건 저가의 제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며,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한 후 제품을 구입해야



▲ 해당업체의 관리자에게 불법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불법제품(左), 인증확인제품(右)의 라벨 모습 비교

향후 제품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사고발생시 분쟁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며,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의식고취도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 적발된 불법제품은 절차에 따라 조치

이번에 적발된 불법 차량용 광택제는 총 6개 품목으로 수량은 250여개였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 현장

에서 판매 중지요청을 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끝으로 “차량용 광택제 제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더불어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근절시킬 것”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조사를 마쳤다.